
고양시주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감시원 간담회 결과에 따른

소각장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실태 확인결과(보고)

2021. 7.

**고 양 환 경 에 너 지 시 설
[주민지원협의체]**

소각장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실태 확인결과(보고)

■ 추진배경

고양시 주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감시원 간담회를 통하여 소각장 및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안전하고 깨끗한 소각장운영과 쾌적한 삶의 환경을 고양시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 주민감시원 간담회 현황

- 일시 : 2021.6.11.(금) 13:00~15:00
- 장소 : 고양시환경에너지시설 2층 회의실
- 주관 : 고양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간담회 참석자(12명)

| 구분 | 직책 | 성명 | 비고 |
|-----------------------|---------|--------------------|----|
| 고양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청소시설팀장 | 조규철 | |
| | 청소시설부팀장 | 하지은 | |
| | 청소시설주무관 | 윤서학 | |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환경에너지사업처 | 자원관리팀장 | 김원근 | |
| | 자원회수팀장 | 정경두 | |
| 주민감시원 | | 김귀환, 박준상, 유경숙 | |
| 주민지원협의체위원 | | 정병현, 신용화, 심미영, 김종표 | |

※ 2021년 주민감시원 현황

| 순번 | 성명 | 위촉기간 | 연락처 | 비고 |
|----|-----|-----------------------------|---------------|-------|
| 1 | 유경숙 | 2021.04.01.~2022.03.31.(1년) | 010-5673-0027 | 와이시티 |
| 2 | 박준상 | 2021.04.27.~2022.04.26.(1년) | 010-3704-3883 | 원스턴파크 |
| 3 | 김귀환 | 2021.05.20.~2022.05.19.(1년) | 010-2431-1836 | 와이시티 |

□ 2021 주민감시원 간담회 개선요구사항 : 붙임 #0 참조

■ 소각장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실태 확인결과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불법 소각처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적용대상 폐기물은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폐형광등, 수은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폐납산배터리, 폐의약품 등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로 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 2017.12.13.

▲ 생활계 유해폐기물처리실적 현황

- 기간 : 2021.1.5 ~ 6.1(약5개월)

-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실적(고양환경에너지시설)

| 구분 | 계 | 마약류/의약품류 | 경찰서 유실/습득물 | 음식물쓰레기 협잡물/기타 |
|----|----|---------------------|---------------|-----------------------|
| 횟수 | 27 | 8 | 12 | 7 |
| 비고 | | 대마, 필로폰, 폐기의약품 등 | 지갑, 가방, 운동화 등 | 폐기종량제봉투, 음식물 협잡물 등 |

※ 불임 #1-1 고양환경에너지 시설이란?

※ 불임 #1-2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등)

※ 불임 #1-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실적(2021년)

▲ 확인결과

•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고양시 또한 유해폐기물 소각을 묵인,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발생하는 협잡물을 별도 처리 계획 없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소각처리하고 있음

•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를 위반하고 있으며,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고스란히 피해지역 주민이 받아야하는 고통입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비용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주민지원기금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대한 문제점

▲ 개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반입쓰레기 성상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나 신뢰성과 성상조사 실태를 파악하고자 2021년6월4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폐기물성상조사 현장참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법령과 실태를 확인결과 2015년부터 외부 전문분석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2021년부터 외부 전문분석기관을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음.

※ 붙임 #2-1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폐기물관리법 제17조 등)

▲ 확인결과

● 고양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등 법령을 위반하여 반입폐기물 성상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제정인 2015년부터 자체 성상조사만을 실시하여 왔음.

● 자체 성상조사 결과는 쓰레기 성상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반입불가 쓰레기도 불법반입 및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양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 붙임 #2-2 사례1

태안군 등 11개 지자체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 성상조사 공고문(2016. 3. 29)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공고문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2016 - 41호

※ 붙임 #2-3 사례2

생활폐기물 성상조사(분석)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청주시 시설관리공단)

3.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문제점

▲ 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실적 확인결과 매년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대행업체 평가계획과 실적이 2018년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음.

※붙임# 3-1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2019.12.31.)

▲ 확인결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속적인 불법적인 반입을 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1998년 이후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사례가 한 건도 없음.

※ 고양시 평가계획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비공개문서로 공개거부

(서울시 강남구는 인터넷에 평가추진계획 공개함)

●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 주민홍보 없이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현장평가단을 추천/구성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 참여가 제한됨.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점검 및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소각현장에서 감시원의 제재로만 진행되고 있음.

(폐기물 반입차량의 오폐수 무단방류, 차량 청결 오염 등)

●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 게시물이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 등의 사례를 찾을 수 없음.

※붙임# 3-2 :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평가 결과(고양시)

※붙임# 3-3 : 2018년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 평가단 현황(고양시)

※붙임# 3-4 :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촉기간:2018.3.25.~2020.3.24.)

※붙임# 3-5 : 사례1) 2016년 청소대행업체 평가 추진계획(강남구)

4.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 반입규정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실적 미흡 / 반입불가품목 무단반입

- 반입규정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며, 반입규정 위반차량의 제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반복적, 지속적으로 반입규정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음.
- 반입규정 위반차량 처분실적(2020.4.11.~2021.5.13 / 약1년)

| 적발건수 | 처분결과(%) | | |
|------|-----------|----------|---------|
| | 미처분(교육대체) | 경고 | 정지3일 |
| 289 | 204(70.6) | 57(19.7) | 28(9.7) |

※ 위반차량 57대(1대가 중복 위반, 최대 19번 위반한 차량도 있음)

※ 1개업체당 일반차량2~3대 보유가 적격업체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모든 수거대행업체에서 반입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동일사례 재위반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확인불가

• 정기보수를 위한 소각시설 미가동 기간과 반입규정위반차량의 제재기간 중복으로 제재효과가 없음.

• 고양시 조례에 반입불가 품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무단반입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음.

• 또한, 고양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계약시 자체 적환장에서 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하여 반입하도록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점검도 제재도 실시한 사례가 없음.

※ 붙임#4-1-1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반입 제한)

※ 붙임#4-1-2 반입규정 위반차량 처분(예)

※ 붙임#4-1-3 소각시설 미가동 기간과 위반차량 반입정지 기간 중복 실적 현황

※ 붙임#4-1-4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 반입차량의 안전기준 점검실적 미흡

•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점검이 형식적이고 실적이 없어 매년 같은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현재 대행업체의 12개 중 10개 업체가 1998년부터 안전점검 미실시 및 형식적인 평가로 인하여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

※ 붙임 #4-2-1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2020년)

※ 붙임 #4-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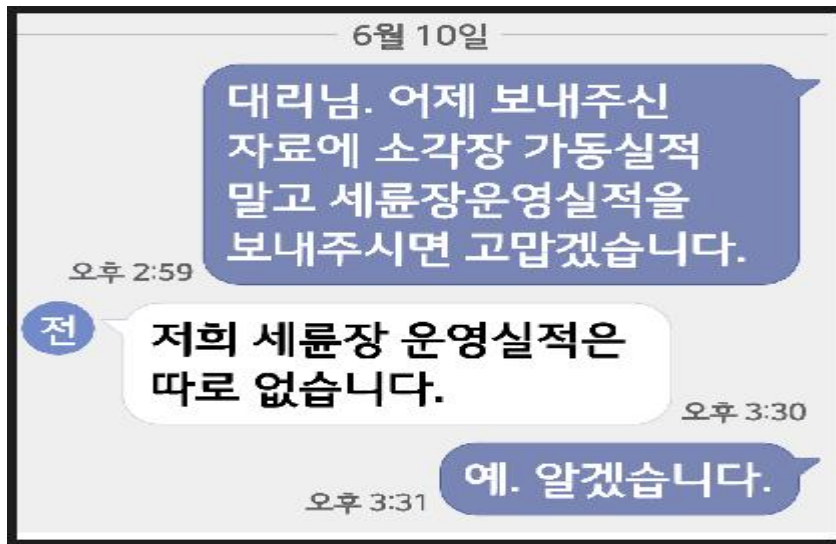
▲ 세차(세륜)장 운영과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 미흡

- 생활폐기물 반입차량은 침출수나 오물을 흘리지 말아야 하며, 누출시켰을 경우 즉시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하도록 되어있는 준수사항에 따라 쓰레기 반입 후 출차 시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세차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운영실적이 없음.

- 또한,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풍향에 따른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1일 소각용량 : 300톤

- 세륜장 운영실적 요구에 대한 답변 (2021.6.10. / 지원팀 전송이 대리)



- 비산재 발생 민원에 대한 답변(2018.3.22.)

| 비산재 날림 억제 관련 대책알림 | |
|-------------------|--|
| |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비산재 날림관련 민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내용 | 1. 이동식 소형 집진기 설치 |
| | 2. 비산재 작업장 출입구 좌우측 에어커튼 시스템 운영 |
| | 3. 시설동 특수차량 및 장비 반출입구에 추가 에어커튼 설치 |
| | 4. 건물주변 및 반입장 물청소 실시 |
| | 위와 같이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비산재 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
| 작성일 | 2018년 3월 22일 13시 22분 8초 |

※ 타지역 세륜/세차 시설에 대한 사례

- 사례1 구미4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소각시설 : 1일80톤처리, 악취방지시설 설치, 처리시설내 공기를 연소공기로 이용처리, 탈질(SCR) 및 유해가스처리설비 설치, TMS설치
- 사례2 서산시 폐기물소각장 설치 : 1일50톤처리, 세륜세차시설 설치
- 사례3 강진군 폐기물소각장 설치 : 하루 20톤 처리, 세륜시설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 설치 협의

※ 붙임#4-1-1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반입 제한) 참조

※ 붙임 #4-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 구서대책 요청에 대한 부실

- 추진경과
 - 2020년 6월 감시원과 간담회 결과
 - : 소각장 내 다량의 쥐가 서식하고 있어 해결방안 모색 요청
 - 2020년 7월 해충방제 서비스 사업 안전상정/계약(7월 정기회의/7.1)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설치현황 |
|----------------------------|----------------------|---|
| 2020.7월 ~ 2022. 6월 (2년) | 년1,680만원 (월14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더블루 15대(와이시티11, 윈스턴4) • 구서방제서비스는 건물 외곽으로 설치 |

- 2021년 6월 고양시 주관 감시원 간담회 결과
 - : 저장고(병커)에 서식하는 쥐들이 외부로 나오고 있어 주민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 됨.
 - : 감시원 사무실에서 쥐 사체가 발견된 사례도 있으나 출입문에 방충망 설치한 외에는 쥐 유출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8. 3. 3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시설(주민편익시설)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요구 무시

▲ 추진경과

1) 주민편익시설 백석체육센터 이용환경 개선 요구(안)/2020. 6. 3(수)

- 내용

일정 : 매주 일요일 오전06~12시

장소 : 풋살장, 테니스장(1면 강습, 2면 주민), 농구장, 게이트볼장

2) 생활체육시설 대관신청 사용(2020년7월~2021년5월)

- 장소 : 풋살장(와이시티주민으로 구성된 풋살 동호회/주민지원협의체 공문발송)

대관사용에 따른 관련규정 참조 : 붙임 #5-1

3) 민원제기로(동안교회 풋살동호회) 인한 피해지역 주민 우선대관 불가 통보/홈페이지게시([백석생활체육시설] 풋살장 공지사항/2021-05-17)



4) 주민편익시설 이용환경 개선 재요청(2021.6월)/현수막 설치

5) 고양백석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의 피해지역주민 무료개방 요청(2021.6월)

- 수신처 : 고양도시관리공사(체육문화2처), 백석체육센터

6) 생활체육시설 대관신청(2021.6월) : 대관불가 방침 통보

▲ 문제점

• 고양 백석체육센터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견을 무시하는 운용을 당연시하고 있는 실정임.

※ 붙임 #5-1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백석체육센터 회원 이용약관 및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6. 시설견학 및 다양성영화 상영 미실시(2018년 12월 이후 실적 없음)

▲ 추진경과

- 1) 고양환경에너지시설 견학 및 주민홍보에 따른 협조 요청(2회)
 - 1차 : 2020.7.11(2020년7월3일 신규 확진자 수 52명)
 - 2차 : 2020.9.12(2020년8월5일 신규 확진자 수 45명)
 - 결과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불가통보
- 2) 고양환경에너지시설 견학 및 주민홍보에 따른 협조요청(2021.7.2.)
 - 결과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불가통보(당시 신규 확진자 수 500명 내외)
- 3)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홍보를 위한 다양성 영화 상영
: 2017년 5월 ~ 2018년 11월까지 운영

▲ 문제점

- 고양시는 코로나19감염병을 이유로 주민 견학 및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등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홍보에 대한 관심과 시의 정책 부재로 시민의 정책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소각장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붙임 #6-1 사례) 생활폐기물 성상조사 체험계획(관악구)_20150603

II 성상조사 체험계획

- 조사기간 : 6월중 3회 실시, 하반기 9~10월 예정
- 체험시간 및 장소 : 동별 자율지정 실시
 - ※ 배출된 쓰레기동량제 봉투를 미리 수거후 파봉하여 성상체험,
또는 쓰레기 배출시간대(20:00이후)에 현장에서 성상체험 자율선택 실시
- 조사주관 : 동직원 및 동주민실천단
- 참관단체 : 지역 통반장, 직능단체, 주민 등 30명 이상
- 조사방법
 - 구역설정 : 동별 3 ~ 5개통을 1개 구역으로 설정
(상가지역은 별도 실시)
 - 성상조사 대상 : 일반주택 배출 동량제 봉투(5개), 상가지역 배출동량제 봉투(5개)

7.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원의 역할/기능과 우리가 바라는 소각시설?

□ 주민지원협의체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약칭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시설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주민 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민감시요원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고양시)이 위촉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합니다.

※ 붙임 #7-1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원의 관련 법규

□ 문제점

- 고양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단 한번의 협의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개방 및 성상조사 관련 진행사업도 코로나19 감염병을 핑계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 폐촉법에 의거하여 위촉된 감시원의 요구사항도 묵인하고 있으며,
 - 2020년 환경상영향평가 결과 후속조치로 소음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에 따른 어떠한 후속조치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우리가바라는 소각시설은?(사례참조)

-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소각장
 - 연합뉴스(2019-05-22) : [르포] 혐오시설이라고?...놀이시설 같은 일본 쓰레기 소각장
 - ※ 참조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28200065>
-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 청소공장
 - 매일신문(2019-10-07) : [대책없이 쏟아지는 쓰레기]<7>친환경 소각장 21개 설치, 주민 신뢰 얻은 도쿄
 - ※ 참조 : <http://news.imaail.com/NewestOpinion/2019100713554180589>